

Newsletter

August, 2025



ICR



목 차

1.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2. 모빌리티센터, 대형 열충격시험기 도입
3. 에너지효율분야 Scope 확대
- 전기스토브 및 사이니지디스플레이 품목
4.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예정
5.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인증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실천 가이드
6.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관한 공고 일부 개정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식]

△ 왼쪽부터 홍성욱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 연구소장, 김덕용 ICR 대표,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심상우 ICR 부사장.

■ ICR, 와이즈스톤과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분야 MOU 체결

국내 대표 **KOLAS 적합성평가기관 ICR**은 2025년 7월 21일 ICR 본사 대회의실에서 **국가공인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기관 와이즈스톤과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시험·인증 기술력과 산업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시험·인증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



■ 유럽연합(EU), 무선기기지침(CE/RED) 사이버보안 규제 적용

2025년 8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CE/RED(무선기기지침) 개정안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공식 반영**됨에 따라, 관련 시험·인증 수요가 글로벌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두 기관은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 시험 체계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TIC(Test·Inspection·Certification)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R Polska, RED 인증을 발행하는 Notified Body(2703)

ICR에서 100% 투자하여 **폴란드**에 설립한 ICR Polska는 RED 인증을 **발행**하는 Notified Body(2703)로서 **RED에 따른 사이버보안 인증이 가능**합니다.

ICR, 와이즈스톤 및 ICR Polska를 통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CE/RED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 체결



■ 주요 협약 사항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시장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공동 수행
- ❖ **ICT** 시험인증 고객에 대한 상호 우대
- ❖ **ICT** 표준화 적용 확대
- ❖ 시험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 추진

■ **ICR**은 와이즈스톤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험·인증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TIC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 문의처

영업부 / 임재영 부장

T. 070-5083-7909 / jylin@icrqa.com

모빌리티센터, 대형 열충격시험기 도입



■ ICR, 대형 열충격시험기 도입

2025년 7월, ICR 모빌리티센터에서는 대형 열충격시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보유중인 열충격시험기에 추가로 도입하여 근래에 대형화되고 있는 자동차 전장품, 모터류 및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고질량 제품에 대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모빌리티센터, 대형 열충격시험기 도입

■ 시험 장비 사양

- 1) Max. Weight : 250 kg
- 2) Table size (mm) : 1450 (W) x 850 (D) x 700 (H)
- 3) Chamber temperature range : -65 ~ 175 °C
- 4) Type : Elevator

문의처

모빌리티센터 / 임 대 현 이사

T. 070-5083-7908 / terry.im@icrqa.com

에너지효율분야 Scope 확대

-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효율관리기자재 2개 품목 신규 지정 승인

IC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시험 능력을 인정받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서 2개 품목에 대해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새롭게 승인을 받아 Scope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승인 일자 및 품목

- ❖ 승인 일자: **2025년 7월 14일**
- ❖ 승인 품목: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Signage Display)**
- ❖ 승인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제6조



[삼성 사이니지디스플레이(Signage Display)]

에너지효율분야 Scope 확대

-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승인 공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신청 승인 통보(주식회사 아이씨알)

1. 관련 근거

-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등)
- 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778(2025.7.14.)호

2. 주식회사 아이씨알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동 사의 시험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지정 신청을 승인합니다.

○ 승인 품목 :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이상 2품목. 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수신자 주식회사 아이씨알,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에너지효율분야 Scope 확대

-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적용 범위

전기스토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 W 이상 10 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 제외 대상 ❖

- (1)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 (2)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 (3)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 (4) 중앙 난방 시스템
- (5) 공기 덕트에 접속 된 난방기
- (6)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 (7) 축열식 난방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Signage Display)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제품
-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 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얇은 제품에 한함.

❖ 제외 대상 ❖

- (1)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 (2)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 된 제품
- (3) LED 전광판
- (4)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 (5)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 (6) 실외 공간에서 설치되는 제품 (통상 휘도 1,000 cd/m² 이상)



에너지효율분야 Scope 확대

- 전기스토브,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제조·수입업체의 대응 방안

- ❖ 사전에 시험기관 컨설팅을 통한 제품 시험 준비
- ❖ 고시된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 확보
- ❖ 유통 시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정보 표시
- ❖ 제품 사양 변경 시, 재시험 및 변경신고 필요

■ ICR,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효율관리시험기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 승인된 두 품목은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및 시험검사 의무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제품 유통 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ICR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효율관리시험기관**입니다.

에너지효율분야 3대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시험성적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안전평가센터 / 양 영 준 팀장

T. 070-5083-2631 / yangyj@icrq.com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예정



■ 구동축전지 인증

구동축전지는 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구동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합니다.

2023년 8월부터 자가인증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서만 인증 시험을 진행하는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예정



■ 시험 규격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 48과 48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 항목

항목	주요 사항	구동축전지	이륜차 구동축전지
진동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안전성	○	○
열충격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전성	○	○
연소	화재 발생 시 승객의 대피 시간 확보	○	○
단락	외부단락 조건에서 보호기능에 대한 안전성	○	○
과충전	과충전 조건에 대한 안전성	○	○
과방전	과방전 조건에 대한 안전성	○	○
과열방지	내부 과열 조건에 대한 안전성	○	○
과전류	과다 전류로 인한 사고 방지에 대한 안전성	○	○
침수	침수 조건에 대한 안전성	○	○
기계적 충격	충돌 시 발생하는 관성 하중에 대한 안전성	○	-
기계적 압착	충돌 시 발생하는 접촉 하중에 대한 안전성	○	-
낙하	물리적인 충격에 대한 안전성	○	○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예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5년 2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2'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소에서만 본 규격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ICR의 진행 현황

타 시험소보다 앞서 법령에 부합하는 시험소 지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중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
완료**가 **예상**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도 구동축전지 시험을 진행하여 **고객사 제품의 신뢰도
및 시장 홍보에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을 비롯한 **모든 배터리 시험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IC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배터리시험센터 / 박 영 호 센터장

T. 02-6351-9003 / youngho.park@icrqa.com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인증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실천 가이드

■ ISO 인증심사 부적합 보고서 작성 실무 가이드

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중 부적합이 발생하면, 단순히 “처리했다”는 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CR 심사원들이 실제 인증심사 중 자주 발견하는 오류 사례와 올바른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 전체 흐름 이해하기

단계	목적	핵심 질문	기대 결과
1. 원인분석 (Root Cause Analysis)	문제의 근본 원인 규명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동일 문제의 반복 방지
2. 시정 (Correction)	발생한 문제의 즉각적인 제거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장 복구 및 신뢰 회복
3.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유사 부적합의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개선 및 예방 구조 확립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인증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실천 가이드

■ 1단계: 원인분석

구분	내용
자주 하는 오류	- "직원 착오", "부서의 주의 부족" 등 모호한 표현 - 현상만 언급하고 근본 원인 미분석
바람직한 접근	- 시스템 결함, 절차 미비, 인수인계 실패 등 구조적 원인 추적 - 5Why, 피시본 다이어그램 활용
예시	부적합: 출하검사 기록 누락 분석: 절차는 명시돼 있었으나, 신입 직원이 교육받지 못함 → 교육 시스템과 인수인계 연계 부재

■ 2단계: 시정

구분	내용
핵심 포인트	- 즉시 조치를 통해 문제 제거 - 정상 상태로 복구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예시	- 시험기록 누락 → 재검사 및 기록 보완 - 자재 혼입 → 격리 및 전량 교체
포함 항목	- 시정 완료일자 - 증빙자료(사진, 기록지, 로그, 시정 전후 문서 등)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인증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실천 가이드

■ 3단계: 시정조치 - 예시

부적합 유형	시정조치 내용
검사 항목 누락	- 검사 기준 재정의 및 절차서 개정 - 검사 체크포인트 전산화 - 현장 작업자 대상 집중 교육 및 사후 이수 평가 도입
변경 관리 부적절	- 변경 요청 접수 → 영향분석 → 승인 → 교육 → 적용까지 전산 프로세스화 - 변경사항 자동 기록 시스템 연동 - 관련 부서 통합 검토체계 신설
작업 표준 미준수	- 작업지침서 개정 후 정기 리뷰 및 확인체계 수립 - 표준작업 정착률 모니터링 KPI 도입 - 관리감독자 육안 점검 외 교육 내실화
설비 점검 미이행	- 설비별 점검 주기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유지보수 기록 전산화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예방보전(PM) 체계 강화 및 효과 모니터링
부적합품 식별 누락	- 부적합품 관리구역 재설계 및 식별체계 이중화 - 관련 라벨링 및 격리 교육 진행
법규 요구사항 미반영	- 관련 법령·고시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변경 시 프로세스 영향분석 및 리스크 평가 시행 - 해당 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신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인증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실천 가이드

■ 마무리

부적합 처리 보고는 단지 '응답'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우는 이 과정은 곧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도 **ICR**은 고객 여러분의 **체계적인 인증 운영과 실질적 개선 활동**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처

시스템인증센터 / 김 기 범 센터장
T. 070-5083-2656 / kgb@icrqa.com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관한 공고 일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부칙 <제2025-50호,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25년 08월 11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관한 공고 일부 개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1항 중 "2017"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3항2 중 "시험은 KN 62920"을 "시험은 별표 1의 KN 62920"로 한다.
- 제4조제3항3 중 "2022"을 "2017"로 한다.
- 제4조제3항4 중 "2022"을 "2013"로 한다.
- 제4조제9항 중 "시험은 KN 50/KN 51"을 "시험은 별표 2의 KN 50/KN 51"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2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4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5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6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7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8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0호 중 "KS X 3132:2014"을 "KS X 3127: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1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2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3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 제4조제11항제15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관한 공고 일부 개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 제4조제13항 중 "KS C IEC 60947-1:2017/ KS C IEC 60947-2:2022/
KS C IEC 60947- 4-1:2022"을 "KS C IEC 60947-1:2014/
KS C IEC 60947-2:2019/KS C IEC 60947-4-1:2018"로 한다.
- 제4조제17항 중 "KS B 6955:2019"을 "KS B ISO 8102-1:2020"로 한다.
- 제4조제18항 중 "KS B 6945:2019"을 "KS B ISO 8102-2:2021"로 한다.
- 제4조제19항 중 "2003"을 "1999"로 한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보도자료

문의처

전파시험센터 / 박 명 철 팀장

T. 070-5083-2646 / pmc@icrqa.com